

# I 사업 개요

##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서대문구에서는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고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 2. 22.  
서대문구청장

1. 사업명 : 2016년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2. 사업취지 : 초기단계의 주민모임을 형성하여 마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
3. 지원대상 : 새로운 주민모임의 형성 및 활동
4.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5월 예정) ~ 2016. 8. 31.까지
5. 지원규모 : 총 30,000천원
6. 지원목표 : 총 30건 내외
7. 지원내용
  - 보조금 : 각 모임 별로 1,000천원 이내 지원
    -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감사비, 식비, 다과비 등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 등 수시 컨설팅 및 상담 지원
    - 보조금 집행관련 회계처리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지원

# II 공모 개요

1. 공모분야 : 자유 제안
  - 주민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임을 형성하는 활동 또는 그러한 모임의 활동
  - 주민 간 소통과 화합,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문화 조성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2. 지원제한 사항

구분	세부내용
단순 복지사업	일반적·수혜적 복지사업 (ex. 단순 도시락(반찬)배달, 김치전달 등)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	특정정당 및 후보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특정 종교 교리 전파	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복하여 보조금(국·시·구비)을 지원받는 사업
일반 강좌 운영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일반 강좌 운영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일반 단순 및 영리모임	단순 친목회 또는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모임(단체, 법인)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주민(마을)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  
단순모임에서 끝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3. 응모자격

- 서울시 및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 주소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대문구인 주민 5인 이상의 모임
  - ☞ 대표 제안자로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대표제안자로 참여할 수 없음
  -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
  - 대표 제안자 3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할 경우 동일한 주민모임으로 간주
  - 기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참여자가 대표 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4. 사업제안자 의무사항

- 2016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준수해야 함
- 대표제안자(3인)가 구청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집합교육 참여 시 필수교육 이수로 인정.
- 선정된 제안사업의 대표제안자는 회계 및 실무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필수

###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6. 2. 22.(월) ~ 3. 6.(일)
- 접수기간 : 2016. 2. 22.(월) ~ 3. 6.(일)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 사업 →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이웃만들기 사업제안서 (서식 1, 서식2) 1부.
  - 주민모임 참여자명부 (서식 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4)

### 6. 사업심사 및 선정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필요성, 공익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성 및 창의성, 지속가능성  
예산편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자부담 사업비 편성조건 미적용이나 자부담 사업비 편성 시 가점부여

선정발표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사업 선정 후 제출서류**

- 서대문구 이웃만들기 지원사업 협약서 작성
  - 협약서 작성 시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사업제안서 1부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청렴서약서 및 이행확약각서 1부
- 보조금 및 자부담 통장사본 및 체크카드사본 1부
  - 우리은행 보조금 및 자부담통장 개설체크카드 발급  
(통장명의: 대표자 성명(단체명) - 예) 홍길동(고은마을주민모임))

**8. 사업비 지급방법**

- 협약 체결 후 교부

**9.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내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구청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을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함.
  -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하였을 때
  -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 등

**10. 추진 일정**

일 정	내 용
2016. 2. 22.(월) ~ 3. 6.(일)	사업 공모·접수
2016. 3월	부서 검토(현장조사)
2016. 3월	1차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
2016. 4. 21.(목)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업 선정)
2016. 5월	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제안서 수정·접수
2016. 5월	협약체결 및 선정 사업선정자 회계교육
2016. 5월	보조금 교부
협약체결일 ~ 2016. 8. 31 (수)	사업시행
2016. 9월	사업 결과보고,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1. 기타 안내사항**

- 문의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 전화: 02-330-1383
  - 메일: [lhyunsuk@sdm.go.kr](mailto:lhyunsuk@sdm.go.kr)

붙임. 1. 이웃만들기 사업신청 제출서류 1부.

2. 2016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 등 1부. 끝.